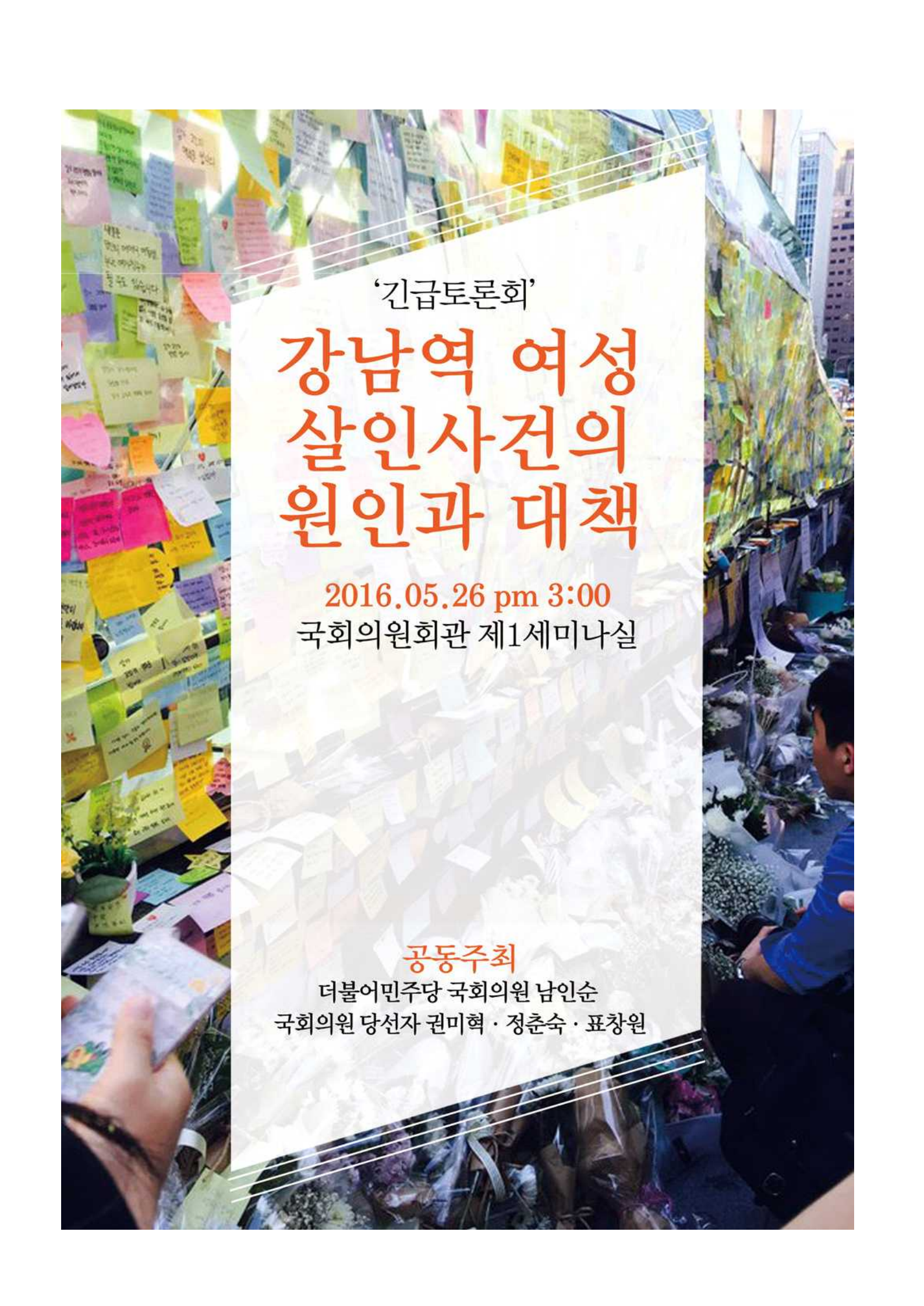




‘긴급토론회’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2016.05.26 pm 3: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당선자 권미혁 · 정춘숙 · 표창원

- 목 차 -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 간사) 인사말

권미혁 국회의원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인사말

정춘숙 국회의원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인사말

표창원 국회의원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인사말

1. 문제는 “화장실”에 있지 않다 :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2.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다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3.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은 무엇인가?

-이택광 경희대 교수·문화평론가

4. 살인과 젠더 불평등: 그 죽음의 가장 깊은 본질

-허민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5. ‘강남역 살인사건’에 따른 여성안전 확보 방안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6. 여성안전정책의 과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 실장

[인사말] 긴급토론회 :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 2016년 5월 26일 (목) 15: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의원 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비탄에 빠져있을 유가족분과 그녀를 사랑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 일처럼 공감하며 아파하고 있을 이 땅의 많은 여성분들에게도 위로를 보냅니다.

○ 도시 한복판에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여성’을 살인했습니다. ‘살아남았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추도글이 아프게 넘쳐나고,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추모의 행렬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를 살인의 이유로 말해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여자’라서 맞을 수 있고 ‘여자’라서 죽을 수 있다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현 사회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대검찰청이 해마다 내는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범죄 피해자 항목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등 강력범죄 가운데 폭력을 뺀 흉악한 강력범죄 피해자 3만4126명 가운데 2만8920명(84.7%)이 여성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뉴스에서 ‘여성’을 언급한 2292만 2390건을 대상으로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연관어 순위에 3위 폭력/범죄, 4위 혐오/여성혐오로 나타납니다. 특히 혐오/여성혐오 키워드는 2012년 대비 21.5배 증가하며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상위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당장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논란보다는 이 사건에서 ‘여성혐오’를 읽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이 사건에 반응하는 현 사회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문제나 치안강화 등 강력범죄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차별과 불평등, 이 사건이 가져온 공포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적대와 폭력에 단호히 맞서고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저는 혐오범죄·증오범죄 등 약자에 대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약자에 대한 차별에 국가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과 인권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볼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 특례법 제정 등 여성폭력 예방에 대해 20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민우회에 감사드리며, 함께 주최해주시는 권미혁·정춘숙·표창원 국회의원 당선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님,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님, 이택광 경희대 교수님, 허민숙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님, 공정식 안전문화포럼 회장님, 노성훈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님,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공론화 단계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저는 애도로서 필요한 일들을 반드시, 착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우리 연대와 추모를 멈추지 맙시다.

2016년 5월 26일

국회의원 남인순

[인사말] 국회의원 권미혁 당선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민주 비례대표로 당선된 권미혁 인사드립니다.

우선 최근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한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남인순 의원님 그리고 정춘숙, 표창원 당선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토론준비를 맡아주신 토론자분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7일, 강남역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을 접한 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강남역 10번 출구’를 추모의 공간으로 바꿔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이어지는 추모의 행렬은 한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죽어간 수 많은 여성들, 그리고 여성이라서 겪는 일상에서의 위협과 불안, 폭력의 경험을 드러내는 공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세기동안 여성운동은 일상에서 겪는 여성의 경험을 언어화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여성의 역사에서 침묵은 곧 죽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강간 등 여성에게 행해지는 모든 폭력에 맞서 세상을 향해 제 목소리를 외쳐왔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온갖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여성의 안전과 생존은 가해자가 아닌 여성 자신이 책임질 문제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례없는 대규모의 전국적 추모의 열기와 함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혐오, 약자 혐오에 대해 논쟁 역시 뜨겁습니다. 여성들은 일상에서 겪었던 혐오와 위협, 폭력을 각자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과 사소한 행동, 불쾌한 시선이 모여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폭력, 문화로 만들어

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이어지는 추모행렬은 이 사회에 바라는 생존의 몸부림과도 같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일상이 언제든 여성들에게 위협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지나치지 말고 함께 연대하여 모두가 안전한 사회, 대안을 함께 만들자고 이 사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 외침에 응답을 할 차례입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에서 젠더의식을 갖고 국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일상의 폭력과 차별에 대해 귀 기울여듣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국회의원 정춘숙 당선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정춘숙입니다.

우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의 최고의 번화가 강남의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1시간 30분 동안 6명의 남자들을 보내고 여성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최초로 만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들은 분노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그동안 일상에서 수없이 당해온 성차별과 성폭력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한 여성의 문제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수많은 여성들이 공감하고,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남인순 의원님 그리고 권미혁, 표창원 당선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아보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토론자분들과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살인은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원인은 사회 구조 안에서 살펴봐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줄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4년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법제도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국회의원 표창원 당선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당선자 표창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원인을 찾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남윤인순 의원, 권미혁·정춘숙 당선자와 제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긴급토론회 임에도 불구하고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약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 짐승의 생태계와 달리 문명을 일군 인간사회는 약자 보호와 개인 안전의 확보가 본질이며 특성입니다. 완력이나 권력, 금력 등 어떤 힘의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거리를 확보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우리를 이것을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힘이 약하거나 다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나 불안, 혹은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번 강남역 사건과 부산에서만 어제 하루 두 건이 연이어 발생한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은 상징적이고 두드러진 사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로 나뉘어 서로에 대한 날선 공격과 폭력적 언행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연코 '범죄의 정치화'에 반대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 피해자를 닮은 잠재적 피해자들의 두려움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 토론회가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공론이나 성대결의 소모적인

다툼이 아닌, 잔혹하고 계획적인, 무자비한 폭력의 원인과 대안 모색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 큰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최선의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범죄의 3가지 요인은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그리고 환경적 요인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더불어 헌법과 법률의 인권보호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어두운 골목길이나 공용화장실 등 범죄 취약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문제는 “화장실” 에 있지 않다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여성에 대한 폭력’ 의 정의문제

1)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1993)

-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손상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반한(gender-based) 폭력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박탈”
- 여성폭력의 범주를 가족 내 폭력, 일반사회에서의 폭력,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구분
-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녀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제시한 여성차별에 해당됨을 확인

2)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이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 없음. 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유형에 따른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음.

2. 여성폭력의 실태

1)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임.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함. 이는 곧, 가부장적 권력관계, 차별적인 문화규범,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전세계 145개국 중 115위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지수이기도 함.

2) 국가통계

- 여성폭력의 실태 전반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 없음.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며, 살인의 경우 사법통계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단순 성별분리통계에 그치고 있음.

(1) 성폭력

- 여성가족부 2013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5%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2.7%, 남성이 0.3%로 조사됨. 여성은 가벼운 성추행 2.4%, 심한 성추행 0.2%, 강간미수 0.03%, 강간 0.1%로 응답한 데 반해, 남성은 가벼운 성추행 0.3% 외에는 응답자가 없었음. 그 외 성희롱 피해율 1.9%와 스토킹 피해율 0.5%는 모두 여성응답자였음.

- 평생 성폭력 피해율에서, 평생 동안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0.2%였음. 여성은 가벼운 성추행 18.7%, 심한 성추행 2.3%, 강간미수 1%, 강간 0.7%로 응답한 데 반해, 남성은 가벼운 성추행 1.3% 외에는 응답자가 없었음. 성희롱 피해율은 여성 10.1%, 남성 0.7%로 응답했으며, 스토킹은 여성 2.9%, 남성 0.6%로 응답했음.

(2) 가정폭력

-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율은 45.5%로 나타남. 그 중 신체적 폭력은 7.7%, 정서적 폭력은 37.2%, 경제적 폭력은 5.3%.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거나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 등의 성 학대 발생률은 5.4%.

- 그러나 이 조사는 성별화된 폭력으로서의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비가시화시키고 있음. ‘부부폭력’ 등의 용어 사용, 피해발생율이 아닌, ‘폭력발생율’로 하여 맥락 없이 피·가해 비율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3) 성매매

- 2013년 성매매 전국실태조사에서 남성의 56.7%(680명)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매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 그 비중은 3년 전(51.5%)보다 증가. 최근 1년간 성매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명 중 1명(27.2%).

(4) 살인 등 범죄

- 강력범죄(흉악-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피해자의 약 90% 여성(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 단순 성별분리통계임.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특성, 범죄발생 상황, 범죄수사 및 처리결과를 알기 힘들.

- 한편, 청주여자교도소의 전체수형자 531명 중, 133명(30.5%)이 남편 살해(살인 중 51.4%). 이들 중 82.9%가 남편의 지속적이고 잔인한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보고(김영희 외,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4)

3)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살해 실태

-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통계 부재한 상황.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해 2009년부터 여성살해 실태를 보고하고 있음.

< ‘분노의 게이지’ 2009년부터 2015까지 누계 >

관계	범죄유형	발생연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내,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살인	70	74	65	120	123	114	91	657
	살인미수	7	54	19	49	75	95	95	394
소계		77	128	84	169	198	209	186	1051
자녀, 부모 등 주변인	살인	16	16	16	16	14	30	23	131
	살인미수	미파악	10	19	19	16	27	27	118
소계		16	26	35	35	30	57	50	249
합계		93	154	119	204	228	266	236	1300

-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의 범행동기(변명)는 다음과 같음. “헤어지자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의심해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생활고 때문에”, “식사 차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술 취한 모습에 화가 나서”, “강낭콩 껍질을 벗겨서”, “양말과 운동화를 세탁하지 않아서”,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홑김에”, “술에 취해” 등

4) 최근 언론보도 사건들

(1) 친밀한 관계(일부만 추림)

2016.3.31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 가두고 인두로 고문(일요시사)
2016.3.31	데이트폭력 당한 前청와대 경호원 여친 숨져(서울신문)
2016.3.31	"생활고 비관" 여친 등 여성 2명 살해한 20대 영장 신청(뉴시스)
2016.3.31	"사업자금 필요해" 동거녀 돈 뜯어낸 40대 구속(뉴시스)
2016.3.6	"날 무시했다" 50대 남성, 내연녀 목졸라 살해(sbs뉴스)
2016.04.03	두 얼굴의 초등학교 선생님... 17개월 아들 아내 폭행(경남신문)
2016.04.06	결별 통보' 애인 속옷 수백 벌 찢은 30대 (연합뉴스)
2016.04.10	"세상에서 제일 못한 행동" 전 여친 납치했다 붙잡혀(경안일보)
2016.04.11	"헤어지자"는 여친에 흥기 위협...40대男 구속(일요서울)
2016.04.11	이별통보 전 여친 방에 가두고 흥기 협박한 40대 입건(KBS)
2016.04.11	자기보다 늦게 귀가한 부인 흥기로 찢른 60대 영장(국제신문)
2016.04.11	고교서 남학생 휘두른 흥기에 여학생 목·얼굴 부상(뉴시스)
2016.04.16	치매 아내 살해 70대 남편 구속(강원도민일보)
2016.04.18	여친 이별통보에 그릇 던지고 강간, 음악가에 징역형 (뉴스1)
2016.04.18	"말다툼 하다 여친 살해" 5일 만에 자수(머니투데이)
2016.04.20	송파 아파트 주차장 여친 살해 남성, 이별 통보받은 뒤 다툼 (뉴스1)
2016.04.25	"왜 다른 남자랑 커피 마셔" 여친 폭행·협박 50대 구속(노컷뉴스)
2016.4.12	가정폭력 고소한 아내 위협, 30대 공무원 구속(연합뉴스)
2016.4.20	입대 앞두고 전 여친 고양이 소주병으로 때려 죽인 남성(인사이트)
2016.4.26	이별통보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 살해(서울경제)
2016.4.8	혼인신고 거절한 여친 손가락 자른 30대 男, 여자친구 감금하고 성폭행...손가락까지 잘라
2016.5.10	이별요구 애인 만취상태서 차에 감금· 10km 달린 40대(뉴스1)

(2) 모르는 관계(일부만 추림)

2016.01.29. 70대 여성 강간 미수 살해 60대 무기징역 선고/광주일보

2016.02.05. 당구장 여주인 살해 뒤 다방 여종업원 강간 미수 40대 징역 40년/뉴스1

2016.02.28. 경주경찰, 산책하던 여성 폭행 40대 男 검거/일요신문

2016.03.07. 천안서북경찰서, 마약취해 10대 여종업원 살해·암매장 피의자 검거/천지일보

2016.04.26. “노래방비 너무 비싸“...운영자 살해한 50대男 징역 15년/포커스뉴스

2016.04.26. 새벽길 길가던 여성에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검거/국제신문

2016.05.05. “성매매 외상” 다투다...다방 女 종업원 살해/채널A

2016.05.20. 술집서 여성에 “남자예요?, 여자예요?” 묻다가 폭행한 50대 男/연합뉴스

2016.05.21. 대낮 부산 도심서 술 취한 50대 낮으로 여성 등 위협/국제뉴스

2016.05.25. 80대 할머니 살해·성추행 ‘病死처리’ 논란/충청투데이

2016.05.25. 부산서 女 행인 2명 몽둥이로 '묻지마 폭행'한 50대 男 입건/조선일보

2016.05.26. 대낮 부산 도심서 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MBN

3. 여성폭력의 대책-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자 그 결과” , “여성대상범죄지만, 여성혐오는 아니다?”

1)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러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차별적 상황을 지속시키고 여성을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함.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적 불평등에서 기인하지만, 성적 불평등을 유지·강화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은 당연히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담보해야 함.

2)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이 사건을 “묻지마 범죄”, “화장실문제”, “정신질환자”의 문제 등으로 규정하고/규정하고자 애쓰고, “남성혐오”, “이성혐오”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뿐더러, 왜곡·축소하는 것임.

3) 정책 과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불평등의 악순환은 강력한 사회적 개입으로 중단될 수 있음.

(1) 여성폭력근절기본법(안) 제정

-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여성폭력에 대해 유형별로 분절적으로 제재하고 있을 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의하고, 국가의 기본방침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없음.
- 또한 일부 유형별 제재는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여성폭력 전반을 아우를 수 없음. 예를 들어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도 성폭력도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그러나 ‘데이트폭력처벌법’과 같은 법률이 또 제정되는 형태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발생함. 어떤 폭력 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관련법을 추가 제정하는 형태가 올바른 것인가. 그렇다면 할지라도 제정까지 생기는 공백은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범죄 유형 및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현행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전면개편 하여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이는, 복지가 아닌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지 않는 독자적 지원체계여야 함. 여성폭력근절기본법(안)을 근거로 지원체계를 새로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여성폭력근절기본법(안) 역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기구 필요

-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정부 부처간 여성정책공조와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의해 행정자치부, 교육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였음.
- 이후 2003년 한국 여성정책전략을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 확립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서의 협력체계 구축을 분명히 하였음. 기존의 부처별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더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를 도입하여 여성부의 여성정책조정기능을 이끌어 나감.
- 그러나 이러한 조정기능은 2005년 여성부가 보육과 가족 등 집행업무를 가져오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여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흡수통폐합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능 상실로 사실상 정책조율기능은 소멸됨.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명칭 변경하고, 실질적 성평등 정책 조율 및 총괄 추진체계화하여야 함.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 성평등 기구 설치 필요.
- 이는, 여성폭력근절 정책 추진체계와도 긴밀히 연결됨. 여성폭력근절 정책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리, 적극적인 예방정책,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이며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효과적임.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정책은 법무부, 예방교육은 교육부 등으로 주무부서를 두고 있음. 부처 간 협력 미비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여성폭력 정책 집행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한 부처별 소견이 상이한 관계로 혼선을 빚기도 함. 이에, 여성폭력근절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 또한 필요함.

(3)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통계 구축

- 범죄 통계는 범죄 예방의 기초적인 자료임. 그러나 현재 범죄 통계에서는 단순 성별분리만 되어 있을 뿐, 범죄 발생 상황, 피·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특성 등은 알 수가 없음. 따라서 통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함.
- 현행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전국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서 신뢰도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자 함. 그러나 범죄예방과 대안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피해자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여성폭력/여성대상범죄를 특화하는 별도의 통계가 필요함

(4) ‘여성보호’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야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지킴이집,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안전지도 등 여성대상범죄예방 대책들은 아마도 정책입안 당시 의도하지 않았을 ‘늦게 귀가하는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된다’, ‘여성범죄는 어둡고 후미진 곳에서 발생한다’, ‘여성이 조심

하면 범죄를 피할 수 있다’ 등의 여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강화함.

- CCTV 확대, 비상벨 설치 등 범죄 예방보다는 신고와 범인 검거 등 사후적 대응에 효과적인 조치들임. 여성 대상 범죄예방에 있어 CCTV 설치 등 치안인프라 구축은 일정 정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정책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밤낮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함. 가해자 또한 낯선 사람, 전과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특정 사람에 국한되지 않음. 오히려 이들은 전체 여성폭력, 여성대상범죄에 있어 일부에 지나지 않음.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또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 따라서 여성 대상 범죄의 발생 장소와 상황을 특정하고, 특정한 사람을 잠재적 가해자로 선별하는 것은 여성폭력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여성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또 다른 성차별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행동규범을 강화하기 쉬움.

(5) 일상의 성평등 정착 노력 필요

- 여성폭력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대상별, 연령별 성평등 인권교육 체계 수립(공교육)
- 성차별, 여성비하적 미디어 제재
- 공익캠페인 실시 등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다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 ‘강남역 살인사건’ 보도건수

방송사	KBS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보도건수	13건	8건	9건	12건	14건	14건

■ ‘강남역 살인사건’ 보도의 내용

보도의 내용	보도 건수
사건 내용	15건
원인 분석	15건
예방 대책	8건
추모 현장	24건
여/남 갈등	5건
기타	3건

■ ‘강남역 살인사건’ 보도의 문제점

○ CCTV를 활용한 자극적인 뉴스 화면

-5월 17일 TV조선 <강남 한복판, 20대 여성 흉기 피살>, 5월 18일 TV조선 <묻지마 살인하고 출근 뻔뻔>, 5월 17일 채널A <화장실 여성 묻지마 살해>, 5월 18일 채널A <여자라서>, 5월 17일 JTBC <강남 화장실서 참혹하게>, 5월 17일 MBN <공용화장실서 살인>, 5월 18일 MBN <강남역에서 추모 물결> 등의 뉴스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CCTV를 통해 가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담배 피는 모습,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들것에 실려 오는 모습, 피해자 남자친구가 충격에 몸을 못 가누는 모습 등을 자세히, 반복적으로 보여줌.

-비록 각각의 장면마다 흐림 처리를 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시신의 모습은 식별 가능하였음. 이렇듯 사건 보도에서 CCTV 화면을 무분별하게 보여주는 것은 범죄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선정적인 보도일 뿐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며, 나아가 시청자 또한 이를 통해 공포와 충격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이 사건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은 여성들에게 공포를 심어 주기에 충분하므로 영상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

-또한 TV조선은 사건 현장에서 기자가 리포팅을 하면서 벽에 묻은 핏자국을 클로즈업하여 여과 없이 보여주었고, MBN은 일러스트로 칼을 든 남성이 여성을 위협하는 장면을 내보냈음. 이는 방송의 선정적인 보도의 전형이며 시청자들에게 공포를 주는 화면임. 사건 보도에 있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사건현장을 보여줄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 범죄’

-5월 22일 경찰은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 범죄’라는 발표를 하였음. MBC는 <“피해망상 탓 ‘묻지 마’ 범죄”>라는 뉴스를 통해 “화장실에 온 여성을 보자마자 공격하고 범행 동기가 체계적이지 않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란 겁니다.”라는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였음. 이는 SBS <‘정신질환 범죄’ 결론.. “여성 혐오 아니다”>, TV조선 <“강남 묻지마 살인, 정신질환자 범죄”>, 채널A <“6차례 입원...피해망상에 살인”> 등의 꼭지에서도 유사하게 다루어진 내용임.

-경찰은 “여성 혐오 범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치관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직접적인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범죄자한테 그런 것이 나타나진 않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가해자가 “여성이 무시해서”라는 발언을 한 것이 바로 ‘가해자의 가치관과 기준’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것이 성립한다고 보여짐. 그러나 언론에서 경찰의 발표를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고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 범죄’로 단정 짓는 것은 언론이 경찰의 발표에 언론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여성혐오 범죄’인지 ‘정신질환 범죄’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닌,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여성혐오와 공포, 폭력에 놓여있고, 이러한 경험들이 밖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임. 분석 대상 중 JTBC의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 ‘묻지마 범죄’>만이 “경찰은 ‘편견이 공격으로 이어지는 혐오 범죄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여성 혐오’를 지적하는 분석이 나온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라며 경찰의 발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음. 이는 대부분의 언론이 현상만 나열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경찰의 발표와 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깊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이번 발표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포를 확산하고, 이들을 범죄자로 단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입장을 다루지 않은 채, ‘받아쓰기식 보도’를 하였음.

○ 실효성 없는 대책에 대한 무비판적 보도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범행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반강제로 입원시키는 행정입원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음.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것임에도, 언론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KBS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추진”>, TV조선 <‘범행우려 정신 질환자는 입원 조치’>, 채널A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추진”> 등이 그 예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지만, 언론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또한 언론은 ‘공용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을 범죄 예방 대책으로 바라보고 있음. JTBC <비명 지르면 ‘화장실 사이렌’>, 채널A <美 공용화장실 ‘안전의 비법’> 등의 보도에서 이러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공용 화장실’이라는 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불편하고 불안한 공간이고, 실제로 범행의 장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공용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음. 하지만 본질적인 예방책은 ‘공용 화장실’ 개선보다는 여성에 대한,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가 만연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임.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책을 다룬 보도 중 이러한 시각 갖춘 보도는 많지 않았음.

○ ‘여/남 대결’ 구도를 부각시키는 보도

-KBS <“추모 열기, 혐오 갈등 변질은 곤란”>, MBC <“여성 혐오 범죄다” 추모에서 갈등으로?>, TV조선 <‘묻지마 살인’ 쫓불 문화제>, JTBC <여성 비하 메모 붙이려다...>, 채널A <女 “여성혐오 탓” vs 男 “아니다”> 등의 보도에서는 추모 현장에서 벌어진 충돌에 대해 다루었고, 특히 MBC는 그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었음. 또한 KBS는 “그 논란의 불길이 ‘여성혐오’와 ‘남성혐오’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남녀 간의 성대결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하였음.

“지난 20일에는 분홍색 코끼리 옷을 입고 "안전한 나라를 함께 만들자"던 31살 김 모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남녀가 서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던 여중생이 팻말을 뺏기고 한 여성에게 밀쳐지기도 했습니다. 추모 쪽지 4장을 누군가 떼내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23 MBC <“여성 혐오 범죄다” 추모에서 갈등으로?>

-추모 현장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은 충돌 그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함. ‘여성 혐오’를 일삼고 있는 ‘일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어왔음에도 이번 사건 목격된 ‘일베’의 행동에 대해서 언론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고 ‘성대결’로 평가하는 것은 ‘일베’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히 다루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증거임.

-이처럼 ‘여성 혐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들은 언론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결론

-이밖에도 KBS는 이번 사건을 다루며 여성들의 다리를 부각시키는 화면을 내보내고, TV조선은 CCTV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고, MBN의 경우 ‘현장 검증’에 대해 다루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내보내기도 하였음. 채널A는 “조금 전인 6시쯤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남성이 이곳 추모 현장을 찾았는데요. 검정 양복을 입고 온 남성은 영정사진에 술을 올리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라며 가십성 보도를 하기도 하였음.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은 대부분 이번 사건을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으로 명명하고 있음. 이를 통해 언론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결국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여성 혐오’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번 사건과 같은 사건은 또 반복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생각까지 들도록 만듦.

-사실 ‘언론의 여성 시각 부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만 확인된 것은 아님. ‘여성 이슈’ 뉴스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여성의 날에도 외면당했고, 여성은 가해자일 때도 피해자일 때도 ‘○○녀’라고 이름 붙여졌음. 심지어 올해 초에 JTBC는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보다 남성혐오가 더 많다는 말도 안 되는 심층보도를 내놓기도 하였음.

-이처럼 언론에서 성차별적인 시각을 확대재생산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다시 한 번 언론인 교육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지 않는 보도를 위해 필요한 원칙은 무엇인지 언론이 스스로 이것을 정립해야 함.

-또한 언론이 정기적으로 ‘여성 이슈’를 보도를 했으면 함.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그저 관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길 바랍. 이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될 것임.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은 무엇인가?

이택광 (경희대 교수·문화평론가)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은 그 동안 한국 사회에 잠재해 있던 뇌관 하나를 터트렸다. 이 뇌관은 엄연히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 되었던 문제를 수면으로 띄워 올렸다. 바로 그것은 여성차별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 문제는 ‘여성혐오’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속내를 파고들어 가보면 더 복잡한 층위들을 감추고 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처음에 ‘여혐’에 근거한 증오범죄인지 아닌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불타올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오범죄보다는 조현병의 망상에 따른 ‘묻지마 살인’으로 규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경찰의 발표대로 이 살인행위가 증오범죄라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혐’과 조현병의 망상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현병의 망상이 현실적 접촉을 누락하고 있다는 치더라도 그 망상의 구조는 상당 부분 상징계의 간섭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그 조현병의 망상이 왜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페미사이드였는지,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과 무관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묻지마 범죄’인지 아니면 ‘증오범죄’인지 여부를 가리는 진실공방의 차원을 넘어서서 진행 중이다.

나는 이런 사건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상이 일베의 행동이라고 본다.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일베는 왜 강남역에 갔는가”이다. 어떤 이들은 일베를 ‘여혐종자들’이 모여 있는 특수집단으로 간주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일베는 보통의 한국 남자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극단적으로 회화화해서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일베는 개그콘서트의 열화버전인 셈인데, 일베는 규범을 넘어서는 파격성을 통해 집단적 쾌락을 즐기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옹달샘 파동’ 역시 이런 관점에서 몇몇 정신 나간 개그맨들이 일으킨 문제라기보다 평소에 방송의 규범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여성 비하 발언들을 팟캐스트라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매체 특성을 통해 마구 쏟아냄으로써 차별성을 노렸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올바름의 규범이 강화될수록 이런 차별화를 통해 얻는 해방감은 더욱 강렬해지는 법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처럼 전방위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이

관철되고 있는 곳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남성 중심적인 ‘해방의 코미디’는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파시즘을 통해 근대화를 달성한 한국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자유주의적 규범은 여전히 넘치면서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물어보자. 도대체 왜 일베는 강남역으로 갔을까. 말 그대로 강남역은 추모의 공간이었다. 그 추모의 공간에서 일베가 외친 것은 이 사건을 남녀 대결로 몰아가지 말라는 것이었고, ‘묻지마 살인’을 ‘증오범죄’로 포장함으로써 ‘남혐’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남성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럴 듯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평소 당했던 수많은 여성차별의 사례들을 증언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남성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보자면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혐’이라는 것이 ‘매너 없는 일부 남성’의 문제일 뿐이고, 대다수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몇몇 꼴페미들’이 선량한 여성들을 선동해서 무고한 남성들을 미워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일베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여혐’이란 것이 단순히 ‘여성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사실 지금 통용되고 있는 ‘여혐’이라는 말은 misogyny의 번역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은 단순히 여성을 미워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Misogyny는 여성적인 것을 알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문화적 태도나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인류사 자체가 ‘여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여혐’의 역사는 장구한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여혐’은 특정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인류 문명 자체에 내재한 구조적인 논리임으로 판명 난다.

그러므로 ‘여혐’에 대응하는 ‘남혐’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난센스이다. 19세기 영국에서 워렌 패럴(Warren Farrel)이 만들어낸 이 개념은 가부장제의 피해자가 여성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성인권의 처지를 감안해서 생각해본다면 이런 패럴의 주장은 남성 노동자가 처해 있던 계급적 불평등을 젠더 문제와 혼동한 결과물일 뿐이었다. 남성 중심주의가 계몽주의와 근대성의 근본 원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남혐’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혐’이라는 개념은 ‘여혐’에 대칭상인 것처럼 위장되어서 여성차별의 구조성을 은폐하고 문제를 남녀대결구도로 환원시키는 착시현상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레이첼 보울비(Rachel Bowlby)가 지적하는 것처럼, 근대 자본주의는 여성을 소비와 여가에, 남성을 생산과 노동에 위치시키면서 이른바 ‘현모양처’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차의 문제는 근대를 구성하는 본원적 축적에 구조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회피하고 여성차별 문제를 남녀대결 문제로 수렴시켜서 이 익배당의 경쟁구도를 강조하는 이런 논리는 상당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통해 불거져 나온 여성들의 발언들은 이 문제가 단순하게 남녀대결 구도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여성차별과 여성대상 범죄의 경험을 성토했던 여성들의 발언들은 참으로 광범위했고,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이었다. 이 발언들이 전형적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젠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준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차별의 문제는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 일상의 평범성에 깔려 있는 ‘여혐’을 넘어서서 여성 문제를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한국 역시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페미니즘 활동가의 활약이 있었기에 이만큼이라도 젠더 감수성이 확립될 수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강남역에 간 일베는 ‘특수한 남성들’이 아니다. 마치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듯이, 이들은 지지를 얻기 위해 어릿광대짓을 서슴지 않았을 뿐이다. 몰락한 백인 남성 노동자의 지지가 없었다면 트럼프도 없었듯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한국 남성’이 없다면 일베도 없다. 일베는 이런 ‘한국 남성’을 대표한다고 자처하기에 당연히 강남역에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상대적 박탈감은 분명 ‘여성 때문’이 아니지만, 일베를 비롯한 ‘한국 남성’은 ‘여성 때문’이라고 믿는 것 같다. 내 생각에 이런 믿음은 일베 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평범성을 구성하고 있는 일상적 기제이다.

나는 한국의 가족구조와 생산관계가 결과적으로 이런 ‘여혐’을 통해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임금 차등이다.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입사해서 일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는 임금을 적게 받는다. 이 문제는 이미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불거져 나온 것이다. 당시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와 똑 같이 일하면서도 임금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았다. 이런 차별은 이른바 경제개발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성 노동자는 언제나 ‘임시’였고, ‘보조’였다. 남성은 큰일을 해야 하고 여성은 현모양처로서 남성을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가족 이데올로기는 이런 경제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였다. 여성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일베가 토로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여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가부장제를 중심 이데올로기로 구축했던 근대적 경제모델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전후 국가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청년세대는 취업은커녕 결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성장제일주의는 경제구조를 지탱하는 ‘전통적 가족 구성’이라는 최후의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전체를 조망할 수 없이 파편적 사실만을 통해 진실을 추단하는 ‘편견의 사고’는 눈앞에 보이는 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게 된다. ‘한국 남성’에게 다른 소수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지금 ‘한국 남성’에게 가장 빈번하게 목격되는 약자는 바로 여성이다.

여전히 한국은 다문화적이지도 않고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도 아니다. 장애인도 통행권을 얻지 못하고, 이주노동자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을 뿐이다. 동성애는 강고한 도덕적 금지의 벽에 갇혀 있다. 이들은 여전히 소수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성은 ‘한국 남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거의 자신들과 대등하게 보일 수 있다. 빈번하게 자신들과 대면하면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은 그러나 일베를 비롯한 ‘한국 남성들’에게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여야 한다. 일베가 강남역에 간 까닭은 이처럼 ‘남성보다 열등한 여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베의 태도와 평상시에 여성을 대하는 ‘한국 남성’의 태도는 얼마나 다른 것일까. 강남역 살인 사건은 ‘묻지마 범죄’이든, ‘증오 범죄’이든, 사실상 한국에서 여성이 소수약자라는 사실을 증명한 계기였고, 일베는 이 진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베의 강남행이 증명하듯, 여성은 여전히 한국에서 소수약자이다. 이 소수약자는 소수약자이기에 다른 소수약자와 연대함으로써 ‘여협’의 구조를 타파하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주체인 것이다.

살인과 젠더 불평등: 그 죽음의 가장 깊은 본질

허민숙(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대답해야 할 물음

23세의 젊은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없이 생을 빼앗겼다. 누군가 남겨 놓은 추모 문구에 “죽어가면서 왜냐고 물었을 것 같다”고 적어놓은 그 말이 비수처럼 쏘인다. 누구에게나 삶은 예측할 수 없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고 바라지만 삶을 추스를 새도 없이 죽음은 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고, 그런 죽음을 사고라고 한다.

사고라고 얘기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가 언젠가 휘둘렀을 그 칼부림에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던 여성이 사고를 당한 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 ‘사고였대요’ ‘하필 그 자리에 운 나쁘게 있었던 거뿐이래요’ 이것으로 충분한가를 질문한다. 우리가 답변해야 할 차례다.

범인 스스로 밝힌 ‘여자들이 무시해서 죽었다’는 범행동기와, 다른 누가 아닌 여성이 등장하기를 기다렸다 선별하여 살해한 바로 그 행동은 이것이 우연에 기인한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된 사건이며 여성혐오가 바로 이 사건의 발단일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그렇게도 애써 부인하고 싶어 하는 그 여성혐오, 여성혐오가 무엇이라 생각하기에 여성혐오라는 진단에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는 것일까?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살인사건이라는 여성들의 주장에 ‘남자들이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성혐오냐’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를 좋아한다, 나도 그러하다’는 답변이 이구동성으로 돌아왔다. 여성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여성혐오라는 진단을 혐오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를 수밖에 없다. 대체 여성혐오란 무엇인가?

여성혐오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를 띤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남성들’의 생각처럼 여성혐오란 여성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억저위하는 것이다. 남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여성을 좋아한다는 고백은 사실일 것이다. 마음

에 드는 여성과 데이트하고 싶어 하고, 삶을 나누고 싶어 하고, 실제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여성을 좋아하고 있는데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은 이러한 자신들의 경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성혐오란 보다 넓은 범주의 개념이다.

인터넷을 열면 불과 몇 초 만에 성인사이트에 접속이 된다. 야설과 야동이란 이름으로 온갖 강간과 근친 간의 성관계가 묘사되고 재현된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양의 음란물이 있지만 중심 모티브는 단 한가지로 집약된다 - 여자는 강간을 좋아한다, 싫다고 소리 지르지만 사실은 즐긴다. 원하고 있었다. 성매매는 유흥의 사소한 일부분일 뿐이고 강간방지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장치라는 얘기가 상식처럼 떠돈다. 스마트폰 액정을 실수로 깨뜨려 엄마한테 혼날까봐 가출을 했던, 그래서 잠잘 곳이 필요했던 7살 지능의 13살 지적장애 여자아이를 6명의 성인이 강간하였지만 성매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뽕복이를 얻어먹었고, 그것이 화대라는 이유였다. 아무도 없는 애인의 집에 찾아갔다 홀로 귀가한 애인의 딸인 20살 여대생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 하였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한다.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초범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던 대학생은 사진이 흔들렸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역시 몰카범인 공무원, 그리고 결혼을 앞둔 남성은 각각 공무원이어서,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다. 137차례나 몰카를 촬영 한 남성 의사는 의사신분이 참작되서 신상공개에서 제외되었다.

대체 위와 같은 일이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따지고 묻고 싶을 것이다. 왜 관련도 없는 엉뚱한 얘기들을 끌고 와서 또 다시 남혐을 조장하고 있냐는 얘기도 들려올 것이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한다. 성차별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도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말만큼이나 많이 들려온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만 집중해서 정신병자를 격리하거나 도시안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이다. 서울시가 공용화장실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처럼 말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사회가 가진 여성혐오에 관한 큰 오해를 알아차릴 수 있다. 여성혐오는 결코 여성을 역겨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어떤 특정 남성들에 의한 일시적이고도 순간적인 특정 태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여성혐오는 “그 길고도 부당한 여성차별의 어두운 역사”를 등 뒤에 드리우고 있다. 개인적 관계에서 아끼고 좋아하는 여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성 집단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며, 만만히 여기는 태도, 여성에겐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역할이 있다고 여기는 인식, 여성이란 집단은 남성보다는 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고는 여성혐오의 배경이자 여성혐오를 습득하는 과정이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독립적인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래야 하지만 한 사회 내에서 나고 성장하는 이상, 그 사회의 가치를 습득하고 그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앞서의 예들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철저히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안위를 걱정하고 보호하는데 몰두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누가 더 자격이 있는지, 누가 더 가치 있는지, 누가 더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실천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불평등한 자격과 권한에 관한 사고와 인식을 재생산해 왔음을 아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은 인간인가

여성혐오는 여성을 비인간화 하는 것이다. 여성을 사물로 대하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침묵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앞서 여성이 피해자가 된 사건에서 여성의 입장과 느낌을 삭제해 버리는 것, 이것이 여성혐오 문화이다. 가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 가해자가 직장과 학교,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겪을 망신과 수치심을 염려해 주는 것, 가해자의 앞날이 망쳐질까 우려하며 불안과 장애를 제거해 주는 것, 이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고, 여성이 느꼈을 수치심과 분노와 불안은 염려의 대상이 아니며, 여성의 미래와 앞날은 하등 중요한 관심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안겨주었으며, 다수의 남성들은 이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남성들의 주장이 옳다. 그들 말대로 모든 남성이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일 수 있다. 실제 소수의 남성들만이 폭력을 사용하고 여성을 살해한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응징을 반대하고, 자신에게 닥칠 일이 아니기에 피해자를 유기하고 방관하며, 피해에 취약한 이들의 호소를 냉소하는 그 일들은 직접 폭력이 발생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폭력 가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공모라 칭할 수 있는 위중한 폭력의 형태이다.

지금의 우리와 같은 평범하고 소중한 삶을 당연히 누렸어야 할, 어딘가에서 어쩌면 우리와도 우연찮게 마주치게 되었을지 모를 23세의 그 삶이 송두리째 일순간 사라지게 된 데에는 문제의 정신병자와 공용화장실, 그리고 하필 그 곳에 가게 된 그녀만이 존재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세 주체가 진공상태 속에 섬처럼 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온 사회에 그 책임을 묻는다

한 명의 여성이 강간당하는 데에는 정신이상자인 미치광이 남성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권력과 지배를 미화하고 숭상하는 “강간문화(rape culture)”가 있기 때문이라

는 여성주의의 통찰은 여기서도 적용된다. 어느 평범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모든 여성을 대표해서 ‘남자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참으로 어처구니없이 삶을 놓치게 된 데에는 여자에 대한 자격과 권리가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친 사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울분과 격분을 여성에게 해소해도 되며 그랬을 때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 여성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남성성을 증명하도록 가르친 이 사회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진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여자들이 무시해서’ 라는 가해자의 말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맥락들이 사건 이후에 오히려 적나라하게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목사의 꿈’을 날려버린 청년에 대한 허탈함, 화장실녀, 강남 노래방녀 라는 조롱 섞인 호명, 여성혐오라는 여성들의 명명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여성들의 결집을 신경질적이고, 또 감정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시선은 왜 이 사회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폭력의 종국적 목적은 통제이고 통제는 공포를 통해 쉽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사회는 그 목표를 향해 내달려 온 것처럼 보인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성 개인의 질병, 격분, 분노, 심리적 장애, 공황이라는 불가항력으로 설명하는 동안 여성들은 활동의 영역을 축소해 왔고 자신을 검열했으며 선택의 폭을 좁혀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집단적 상해라는 주장,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에서 모든 여성은 폭력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이에 근거한다.

여성들은 물려서지 않을 것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여성혐오를 정의해 왔는지도 모른다. 여성에게 가장 부합하고 잘 어울리는 역할이 따로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여성은 여성답지 못한 여성이며 처벌과 비난의 대상이라는 인식, 여성으로부터 존경과 복종을 되찾아야 한다는 위기의식, 남성이라면 적어도 여성보다는 더 많은 자격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 바로 이런 것이 여성혐오를 뒷받침 해주는 사고 체계이다. 이렇다 할 때, 이 사회의 그 누가 여성혐오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여성의 죽음에 여성들이 집결하였다. 여성들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감정적이어서가 아니다.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만들면, 여성들이 그에 저항하기 힘들어 진다. 자신만이 그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저항하기 보다는 포기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불운을

타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가 속한 그룹의 또 다른 구성원이 나와 비슷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것이 차별인지, 개인의 불운인지, 아니면 내 실수 인지에 대한 모호성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내가 겪은 두려움과 불안, 피해 경험의 유사성, 그렇기에 저 이유 없는 죽음이 내게도 언제나 현실일 수 있다는 공포와 분노의 혼재를 통해 여성들은 폭력이 왜 차별의 문제인지, 젠더권력이 왜 여성혐오의 배경인지 충분히 인지하였다. 이제 여성들은 물려서지 않을 것이다. 무수한 죽음을 딛고 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로의 명운을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여성들과 협력하기 바란다.

여성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사라지지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를 증언하고 폭로하며, 애통하게 삶이 꺾여버린, 그러나 나와 하등 다를 바 없었던 그 여성들을 위해 이제 여성들은 물려서지 않을 것이다. 이 여성들과 협력해야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 에 따른 여성안전 확보 방안

노성훈(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1. 사건의 의미

‘강남역 살인사건’을 그저 한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400여건의 살인사건(살인미수를 포함하면 900여건) 중의 한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 속에 밀착되어 있는, 그러나 부주의로 또는 안일한 마음으로 간과해왔던, 또 하나의 범죄사각지대로부터 느닷없이 허를 찔린 사건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경찰이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터라 이번 사건은 더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밝혀지지 않은 범죄사각지대가 이 도시 속에 산재되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구체적인 공포가 됩니다. 둘째, 버젓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또 다시 발생한 소위 ‘묻지마 살인’을 목도하면서 ‘역시 어쩔 수 없는 건가?’ 하는 절망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십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뚜렷한 범행동기 없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묻지마 범죄’는 ‘대책을 물어 볼 수 없는 범죄’가 되어 버렸다는 불안감이 커져 버렸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지불해야 하는 ‘위험비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경찰의 발표처럼 피해망상에서 비롯되었든지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혐오로 인한 것이든지 명백히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범죄입니다. 강남역에서 시작된 추모의 물결은 전국의 주요 대도시로 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소 낯선 이러한 사회현상은 피해여성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성적 수치심과 차별,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의 위협 그리고 일상이 되어 버린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심이 담겨 있는 애타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혐오범죄라는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범죄유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살해자가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과 1시간 가량 화장실에서 기다리면서 여성을 노렸다는 점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심리 현상인 여성혐오가 드디어 구체적인 범죄현상으로까지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2. 원인과 대책

1) 위험공간의 관리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으로의 예방 패러다임 전환

과거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머지않은 장래에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이 농후한 장소나 공간을 범죄취약공간 또는 범죄핫스팟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에는 범행기회가 상존하는데 이곳에서 범죄자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잠재적 피해자와 조우할 때 범죄발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특정 공간의 범죄취약성은 시간에 따라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낮 시간동안에 취약한 공간이 있고 야간에 취약한 공간도 있습니다. 날씨나 기후 또는 특별한 행사 등에 따라 공간의 범죄취약성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주무대인 남녀공용화장실 역시 대표적인 범죄취약공간이며 야간시간대일수록 취약성은 높아집니다. 잠재적 범죄자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은밀하게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위험공간은 남녀공용화장실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처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낮은 조명과 기둥으로 인해 가시성이 떨어지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원룸촌으로 향하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재개발지역의 버려진 공동주택과 도심 속 빈집에서, 그리고 유흥가를 벗어나 만나게 되는 어두컴컴한 근린공원에서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치안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범죄 빈발지역과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경찰의 순찰활동 강화,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점검과 CCTV설치, 여성안심구역 및 여성안심귀가길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위험공간 중심 범죄예방대책들을 통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입니다. 위험공간 중심의 범죄예방대책이 체계적이기 위해서는 위험성에 대한 탐지,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구체적인 맞춤형 해결방식의 적용 그리고 객관적인 효과성 평가로 구성되는 환류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예방모델을 학계에서는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하에 전국의 각 경찰서별로 범죄취약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제해결방법들이 광범위한 유형의 범죄들에 대해 시도되었고 다수의 성공적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밖으로 드러난 문제를 피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조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비롯하여 시간, 공간, 제3자 등 범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

인들을 고려하여 범행기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들과의 협력적 관계와 공동의 노력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매년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경찰청이 내놓은 치안강화 대책이 그저 피상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장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이라는 프레임워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예산,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실 경찰에서는 올해 초부터 선제적 범죄대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11개 경찰서에 ‘범죄예방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담당인력이 1-3명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담당 경찰관 몇 명을 배치하여 전담시키는 방법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에 경찰이 예방활동을 전담하던 ‘나홀로 범죄예방’에서 협력적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더불어 범죄예방’으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위험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탐색, 분석, 대응, 평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지자체, 타 정부부처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각 이해관계자들이 가진 인력, 조직, 예산 및 법적권한 등 모든 리소스가 한데 모여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셉테드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로등, CCTV, 비상벨 설치, 벽화 그리기 등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과 단독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범죄취약 건축물에 대해 셉테드 원리에 입각한 건축기준의 적용은 더불어 범죄예방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셉테드적 접근방법이 모든 범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유형별로 근원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방법 중의 하나로 셉테드적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험공간에 대해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을 적용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장소관리자를 활용입니다. 장소관리자(place manager)란 이러한 범죄취약공간과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의 발생장소인 공용화장실의 경우 건물주 또는 업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강도의 경우에는 해당 마트의 사업주가 장소관리자입니다. 범죄취약공간의 직접적인 관리주체라는 점에서 장소관리자는 공간 속의 범죄위험요소들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선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영업을 한다면 이용고객들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영업주에게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3자 경찰활동’(third-party policing)은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장소관리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들이 일정 부분 범

죄를 예방하고 범죄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장소관리자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아울러 미국 등 외국에서의 경우와 같이 ‘관리자 법적책임’ (premise liability)을 적용하여 강제성이 수반된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젠더 중심 범죄예방 전략 추진

살인, 폭력,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여성은 피해자가 되고 남성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범의 83%가 정도를 남성인 반면 살해당한 사람의 44%는 여성입니다. 폭력범죄의 85%가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지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34%에 이릅니다. 성폭력은 98%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고 피해자의 95%는 여성입니다.¹⁾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될 추가적인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범죄위험성은 고스란히 주관적인 차원의 범죄에 대한 공포로 이어집니다.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여성이 78%에 이르고(남자: 23%), 평소에 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는 여성이 58%를 차지합니다(남자: 15%).²⁾ 이번 사건 역시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 여성의 범죄사건의 전형적인 성구조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성의 범죄취약성은 여성이 신체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신체적인 완력과 저항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은 잠재적 범죄자들의 손쉬운 목표물이 됩니다. 또한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남성우월적 사회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정신적, 신체적 인, 성적 폭력에 더욱 쉽게 노출됩니다.

기존의 범죄예방정책에서는 여성피해자의 문제를 주로 이미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일상적 생활공간 속에서 갑작스러운 폭력으로 인해 무참히 희생된 한 여성의 죽음 앞에서 여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입니다. 보다 엄밀하게는 단지 여성으로 산다는 이유로 인해 삶 자체가 더 위험하고 이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어 삶이 주는 풍요로움과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예방 관련 정책이 더 이상 ‘젠더 중립적’ (gender-neutral)이 아닌 ‘젠더 중심적’ (gender-focused)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시라는 공간을 놓고 볼 때 여성과 남성의 주요 활동공간과 이동경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생활양식에서 차이가 있듯이 여성과 남성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차이를 보이며 일인가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주지 분포가 구분됩니다. 따라서 도시구조와 건축에 셉테드 원리를 적용할 때에도 범죄피해 약자인

1)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 기준

2) 여성가족부 ‘성폭력실태조사’(2013) 기준

여성들의 생활양식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범죄안전지수를 산출할 때에도 별도로 ‘여성안전지수’를 측정하여 여성안전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공간의 관리 차원에서도 범죄취약장소나 시설물에 대하여 여성에 대한 범죄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여 셉테드 인증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성안전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안전정책의 과제

장미혜 권익안전실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본 사건이 사회적 공감을 얻게 된 원인

- ▶ 실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 및 사회적 불만과 미래에 대한 절망을 사회적 약자에게 표출(여전히 여성은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
- ▶ 여성다수를 향한 명백한 이유가 없는 범죄
: 모든 여성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협에 대한 공감대 형성.
SNS를 통한 공감대는 사회적 연대로 확산
- ▶ 여성의 분노가 결집하는 계기
: 강남역은 모든 젊은 여성이 가장 빈번하게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공감을 촉발하는 요인이 됨
(마주치는 아무나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대책들

- ▲ 화장실 전수조사 후, 남녀 층별로 구분토록 행정지도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폐쇄 유도
- ▲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 시 화장실 남녀구분 권고
- ▲ 화장실 남녀구분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축건물 허가 시 남녀구분 의무화
- ▲ 취약지역 내 CCTV 전면 설치)
- ▲ 기존 건물에 화장실 남녀구분 예산 지원
- ▲ 안심귀가스카우트 확대
- ▲ 사각지대 순찰 강화
- ▲ 온라인상 성적 갈등 신고 창구 마련
- ▲ 여성안전 인증제 도입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의 정의

-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이 심야나 새벽같이 특정 시간대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공간을 이용가능하고
-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 하는 동시에 성희롱이나 폭력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함

안전에 대한 접근: 정의 및 개념

안전에 대한 선택적 접근(Selective Approach)

- 폭력에 노출될 위험의 소지가 있는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
- 이미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한 대처에 주안점
- 폭력의 피해자의 재희생과 가해자의 재범 방지가 가장 큰 초점이 되며 정책의 대상이 한정적이고 정책 대상에 대한 강도 높은 개입이 이루어짐

안전에 대한 보편적 접근(Universal Approach)

- 폭력의 피해위험성의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정책대상 설정
- 폭력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Community Mobilization)와 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대중의 인식 개선 교육(Public Education)의 중요성 강조

현재 시행중인 여성안전정책

1) 여성가족부

: 현재 지역별로 상이한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함과 더불어 '여성긴급전화 1366'를 공동으로 추진 중

2) 경찰청과 행정자치부

: 'SOS 국민안심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시행 중

3) 경찰청

: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신고 및 지원센터를 운영

4) 국민안전처

: 생활안전지도, 여성안심귀갓길·가정방문서비스 대책,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 생애주기 별 국민안전교육 실시,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를 개발하여 홍보

5) 서울시

: '안심스카우트'를 시작으로 여타 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
: 세부사업으로는 인식개선 캠페인과 '여성안심택배함'을 운영

안전에 대한 접근: 폭력에 대한 접근

	폭력에 대한 선택적 접근	폭력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정책의 대상	폭력피해여성, 고위험군 청소년	일반여성, 학생
정책의 목표	폭력에 대한 이차적 예방(Secondary prevention), 폭력에 대한 삼차적 예방(Tertiary prevention) 또는 선택적 예방(Selective prevention)	폭력에 대한 일차적 예방(Primary prevention) 또는 보편적 예방(Universal prevention)
정책개입 시점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	폭력이 발생한 이후나 발생할 조짐이 있을 경우
정책개입 기간/ 정책효과	일회적, 가능하면 반복하나 반드시 지속적이지 않음	지속적 사후관리
정책사례	-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 - 피해자와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신원카드제도 -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 온라인 예방교육 사이트의 운영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전략

폭력의 용인수준을 낮추는 전반적인 사회발전 선행

-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와 임시거처 제공
-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물리적 요인 개선
- 약물복용과 빈곤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요인 개선
- 주류 판매상점의 수 조절 등 법률적 요인의 개선 등

지역사회 공동체 단위의 행동 전략

-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웃 간의 범죄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식 증대

도시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의 사전 차단 전략

- 거리의 조명, 도로와 차도, 신호등, 교통체계, 공원, 여가시설, 프로그램, 대중교통 존을 구분하는 토지사용과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도시환경 디자인에 있어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도시와 건축구조를 조성하여 범죄가 일어날 상황을 사전 차단(Situational Prevention)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vs. 사후관리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관점

- 넓은 의미의 사회 환경적 요소들을 개선하여 범죄가 사전에 잘 통제되는 정도에 따라 그 지역사회나 국가의 안전여부 예측
- 범죄 자체보다 범죄를 유발하는 실업률이나 낮은 교육, 열악한 주거환경 등 조사

안전에 대한 사후관리 관점

-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황들을 조사하여 해석하고 대책 마련
- 안전한 지역사회인지 아닌지를 범죄의 발생율로 측정

폭력 발생이전의 사전예방 강화

1) 법제 정비방안: 통합법과 기본법

-여성에 대한 폭력 범위 확장-

현재의 기본법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라는 협의의 여성폭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양성평등

2) 대상별로 분화되어 있으면서 포괄적인 폭력예방교육

-학생, 직장인, 남성 등 다양한 집단과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점검하여 공통적인 부분을 통합하고 개별 특수성을 포착하여 효율성 있는 교육을 시행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성폭력 관련 법안

1.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2016.2.9.)

● 제안이유

- 우리사회는 데이트폭력을 경미한 범죄라고 취급하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에 비해 최근 데이트폭력의 피해 인원이 상당한 수준이고(2012년 기준 7,500명), 더욱이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데이트폭력범죄가 폐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여 국가가 인식하거나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행 형사법 체계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임.
- 따라서 데이트폭력범죄 조사·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상담·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성폭력 관련 법안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검사는 데이트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데이트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트폭력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법원은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데이트폭력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경우 해당 데이트폭력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함(안 제38조).

사.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접근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45조).

아. 피해자 등이 받은 물질 피해나 치료비, 부양료에 대하여 신속한 민사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유사한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

자. 보호처분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처벌함(안 제76조).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성폭력 관련 법안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5.12.18)

- 현행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재수위가 다소 낮은 측면이 있음.
-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등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형벌체계의 균형을 확보하고, 관련 범죄 발생을 강력히 억지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개인정보가 보다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성폭력 관련 법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5.12.15)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규정에 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판단력·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정보통신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40.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실제로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중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49.8%로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13.2%,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37.0%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조).

미래의 폭력감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

향후 필요한 폭력감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

구 분		향후 필요한 정책	
		단기적 대책	중장기적 대책
폭력사건 발생이전	피해자대상	- 인터넷, SNS를 통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다변화 - 일반 시민과 학부모 대상 폭력예방교육의 확대 - 피해여성·아동지원 표준서비스 과정 도입	- 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율의 향상 - 생애주기별 폭력예방체계 마련 - 폭력유형간의 통합적 접근과 집단별 차이를 감안한 개별적 접근은 동시에 진행 - 저위험집단과 고위험집단을 구분한 특화된 정책시행
		- 폭력피해자의 이차피해 방지 교육 - 장기적, 반복적 폭력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 방지 - 성범죄피해자의 신상노출 방지 - 피해여성·아동지원 표준서비스 과정 도입 - 피해자의 응급지원기관과 지속지원기관의 구별	가정폭력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의 격리체계의 정착
폭력사건 발생이후	가해자 대상	-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와 지속적 관리 - 여성과 아동 대상 폭력 가해자 처벌 양형기준 강화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발생과 재범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일원화된 자료의 관리

향후의 정책대안

▶ 해외입법사례

1.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 :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 제정

: 각 주정부에 제정되어 있는 혐오 범죄는 기본적으로 인종, 종교,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범죄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가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에 대한 방지 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2. The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 Of 2009

: 주, 지방, 법원은 혐오 범죄(hate crimes)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

: 혐오 범죄는 (1)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을 이유로 범죄를 행했을 때, (2) 종교, 출신국, 젠더, 성적지향, 성 정체성, 장애인인 이유로 범죄를 행했을 때로 정의

3. 혐오범죄 통계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FBI사이트에서 혐오범죄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향후의 정책방향

1. 사후발생에 대한 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개선이 중요

2. 기존의 범죄를 유발하는 외진지역에 대한 정책에서 젊은 여성들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대상 정책강화: '핫스팟'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장치 강구필요

3. 여성안전교육방안:

- 공공기관 대상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의 경우, 현재 의무화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여성은 교육의 사각지대
- 폭력감수성교육을 포함시키는 대안 강구 필요(타인에 대한 배려와 성찰이 없는 삶 자체가 폭력이다)
- 여성에 대한 안전교육: 비상시 대처요령, 호신용 장비(원터치 범죄 신고장치, 전기충격장치가 있는 핸드폰 케이스 등) 지급



감사합니다